



# 여 수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사항 안내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개정에 따라 2025. 8. 17.부터 구비의무기관이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및 불임의 관리지침에 따른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http://portal.nemc.or.kr>)에 점검 결과 등록**
3. 이에 따라 **모든 구비 의무기관은 법적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 붙임 1. (AED)자동심장충격기+관리지침+및+점검방법\_매뉴얼 1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0816호)(20250318)1부. 끝.

## 여 수 시 장

수신자 구비의무기관 751개소 귀하, 돌산읍장, 소라면장, 울촌면장, 화양면장, 남면장, 화정면장, 삼산면장, 동문동장, 한려동장, 중앙동장, 충무동장, 광림동장, 서강동장, 대교동장, 국동장, 월호동장, 여서동장, 문수동장, 미평동장, 둔덕동장, 만덕동장, 쌍봉동장, 시전동장, 여천동장, 주삼동장, 삼일동장, 묘도동장, 보건사업과장, 관광과장, 상수도과장, 문화유산과장, 도서관운영과장, 해양정책과장, 민원지적과장, 농업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기후생태과장, 여성가족과장, 중부민원출장소장, 회계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청년인구정책관, 공원과장, 수산경영과장, 어업생산과장, 체육지원과장

실무원 **배연경**      의약관리팀장 **김행이**      보건행정과장 **김수연**      전결 2025. 7. 10.

협조자

시행 보건행정과-26375      접수

우 59674      전라남도 여주시 시청서4길 47 (학동)      / [www.yeosu.go.kr](http://www.yeosu.go.kr)

전화번호 659-4234      팩스번호 659-5839      / [dialto74@korea.kr](mailto:dialto74@korea.kr)      / 부분공개(6)

『청렴 여수, 바른 시정』 시민과 함께 합니다.